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건강증진과장)
- 제출일자: 2019. 11. 21.
- 회부일자: 2019. 11. 21.
- 상 정: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19. 12. 3, 12. 9.)
- 의 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19. 12. 9.)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산지원금 지급 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거주요건 미 충족 시 추후지급 등, 별도 지급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급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신설(안 제3조제2항)
 - 영아출생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제2항)
 - 거주기간 1년 미만의 경우 2년째 지급은 지원대상이 된 달로부터 1년 후의 다음달에 지급

-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5조 제3항)
 - 신청서 제출기한을 90일에서 1년으로 변경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박성우)

- 동 의안은 출산지원금 지급 시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거주해야하는(현 조례 제3조제1항)” 요건을 완화해, 동 요건 미 충족 시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9년 6월)을 수용하여, 출산가정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
-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만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제3조제1항)이던 것을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안 제3조제2항)”도록 그 범위를 확대.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결국 관내 출산가정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함으로써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2020년 1월1일부터 동 조례를 시행(안 부칙 제1조)하고자 함에도 부칙 여타 조문(안 제2조 및 제3조)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기 조례 개정 취지(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상충될 우려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따라서 타 지자체 조례를 참조하여 거주 제한 기간(其間)을 별도로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개정안 규정 전반(부칙 포함)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특이사항 없음”

6. 토론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부칙의 적용례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 개정취지에 맞게 부칙을 수정하여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첨부서류: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넷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3항2호”를 “제3조제1항2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20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p> <p>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 으로 1년 전부터 신청 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 정으로 한다. 다만, 입 양아의 경우 주민등록 상 넷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 아만 해당한다.</p>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p> <p>①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p> <p>① 출산축하금 지원대 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 준으로 1년 전부터 계 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 가 동일세대에 거주하 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 한다. 다만, 입양아 의 경우 주민등록상 넷 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p> <p>1. 부 또는 모</p> <p>2. 부모의 사망·이혼 등 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 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 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p>
<p><신 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 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이 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지원대상이 된다.</p>

<p>②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영아의 부모 중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영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친권자 및 후견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u><삭 제></u></p>
<p>제4조(지원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년째 지급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넷째 자녀: 2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p><u><신 설></u></p>	<p>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제4조(지원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p> <p><u>② 제3조제2항의 경우 2년째 지급은 지원대상이 된 달부터 1년 후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u></p> <p><u>② (개정안과 같음)</u></p>

<p>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 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u>제3조제2항 2호</u>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p> <p>② (생략)</p> <p>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u>90일</u>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p>	<p>제5조(지원신청) ① ---</p> <p>-----</p> <p>-----</p> <p>-----</p> <p>----- 제3조제3항 제2호</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 1년</p> <p>-----</p> <p>-----.</p> <p>-----</p> <p>-----.</p>	<p>제5조(지원신청) ① ---</p> <p>-----</p> <p>-----</p> <p>-----</p> <p>-----</p> <p>----- 제3조제1항제2호</p> <p>-----</p> <p>-----.</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부 칙</p>	<p>부 칙</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20년 1월 1일</u>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u>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19년 12월 31일</u> 이전 출생 또는 입양한 넷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조(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또는 입양한 넷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u>2019년 1월 1일</u> 이후 출생 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산축하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넷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p>